

- 2024년 -  
중구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24. 8.

인천광역시중구  
감 사 실

새로운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중구

# 2024년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 I 감사개요

###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인천광역시 중구 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주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의2(지도·감독)
- 「2024년도 감사계획」 감사실-452(2024.1.19.)

### □ 개 요

#### ○ 감사기간

(사전조사) 2024. 3. 27.(수) ~ 3. 29.(금) [3일간]

(본 감사) 2024. 4. 1.(월) ~ 4. 5.(금) [5일간]

#### ○ 수감기관: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부서: 총무과)

#### ○ 감사대상 및 범위

- 2021. 1월 ~ 2023. 12월 사업 운영 전반

※ 중구 자원봉사센터 출장여비 조사결과 보고[감사실-925(2024.2.8.)]에 따라 출장여비 감사 제외

#### ○ 감사방법: 현장방문

#### ○ 감 사 반: 4명 [감사반장외 3명]

□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병행 실시

- 조사범위: 2023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 채용 실태
- 대상기간: 2023. 1. 1. ~ 12. 31.
- 조사내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
  - \* (신규채용) 대상기간 내 정규직,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직 등 신규채용 전체
  - \*\* (정규직전환) ‘최초 채용’ 과 ‘정규직 전환 과정’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방법: 공정채용 전수조사 체크리스트 활용한 채용 서류 및 자체 규정 점검
- 채용 현황

(단위 : 회/명)

기 관 명	채용횟수	신규채용			정규직 전환	비고
		계	정규직	비정규직		
인천중구 자원봉사센터	5	5	1	4	-	

## II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 기본 현황

1. 시설현황

- 기 관 명: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배동수 (최초임용 2019.7.9.)]
- 시설현황

구 분	본 센터	영종분소
위 치	중구 신포로46번길 31 (중구보훈회관 6층)	중구 쪽빛하늘로 21, 305호 (영종운남우체국 3층)
면 적	279m <sup>2</sup>	185.01m <sup>2</sup>
설 치 일	2002. 10. 21.	2014. 4. 1.

## 2. 운영현황

### ○ 인력 구성현황

(단위:명)

계	본 센터				영종분소		
	소계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	소계	팀장	운영요원
8	6	1	1	4	2	1	1

※ 코디네이터 2명 별도 (본센터 1, 영종분소 1)

### ○ 자원봉사자 인원 현황

(단위:명)

기관명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148,110	42,604	49,237	56,269	

### ○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보조금 지원액				비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중구 자원봉사센터	소계	<b>725,676</b>	<b>840,594</b>	<b>910,847</b>	
	국비	33,312	35,434	37,150	
	시비	21,489	29,973	41,075	
	구비	670,875	775,187	832,622	

※ 보조금 최종 예산액 기준(국시비포함)

## 3.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재능기부봉사단	2021년~현재	개개인의 재능을 봉사활동에 접목시킴으로써 고품격 자원봉사 실현
캘리그래피봉사단	2021년~현재	예쁜 손글씨를 통한 나눔활동 전개
실물치봉사단	2021년~현재	재봉제품 제작 및 전달 업사이클링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문제해결
폐지나눔활동	2021년~현재	폐지줍는 노인들의 사회적 인식개선 폐지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
수리특공대	2021년~현재	소외계층 대상 소규모 집수리 활동
따스미뜨개나눔사업	2021년~현재	취약계층 대상 목도리 전달
누룽지만들기	2021년~현재	비대면.대면 봉사활동 진행 취약계층에게 식사대용 누룽지전달
병원동행사업	2022년~현재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나눔문화 확산

### Ⅲ

## 감사 결과

### 1 총 평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중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보조금 지원으로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자원봉사자 봉사 활동 관리 등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 및 관내 기업체의 다양한 인프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실시한 2024년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종합감사는 인력 및 기관 운영 전반, 회계 규정을 준수한 보조금 집행 실태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자체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법적 근거없이 승진임용을 한 사례가 적발되어 징계·기관경고 및 시정 처분을 하고자 한다.
- 주요 지적사항으로 총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시정 9건·주의 8건과 재정상 조치로 회수·추징 750천원, 경징계 2건, 기관경고 1건의 처분이 요구된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23. 1월 ~ 12월 기간동안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신규 채용 건을 ‘공정채용 전수조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채용 절차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②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명)			기관 경고 (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계	회 수 추 징	추급	계	징계	훈계	
17	9	8	-	2/750	2/750	-	2	2	-	1

※ 주의·시정 등 중복으로 건수 불일치

## ③ 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 야	제 목	처분내역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기관 경고
<b>처분요구 15건</b>			시정 9 주의 8	회수추징 450	경징계 2	1
1	기 관 운 영	연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업무처리 미흡	주의	-	-	-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방침 공개 의무 미이행	시정	-	-	-
3		조직구성 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정 주의	-	-	-
4		공인 인영관리 소홀	시정	-	-	-
5	인 사	승진임용 처리 절차 부적정	시정	-	경징계 1	1
6		인사기록카드 관리 소홀	시정	-	-	-
7		법정교육 이수 관리 부적정	주의	-	-	-
8	예 산 회 계	보조금 관리 업무처리 소홀	주의	-	-	-
9		예산의 전용 절차 미준수	주의	-	-	-
1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정 주의	회수 300	-	-
11		특근매식비 집행 절차 부적정	주의	-	-	-
12		수의계약 관련 서류 검토 소홀	주의	-	-	-
13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 부과 업무 소홀	시정	추징 450	-	-
14	재 산 관 리	비품관리 업무처리 소홀	시정	-	-	-
15	기 타	직원휴양시설 운영 부적정	시정	-	경징계 1	-

## 1. 연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업무처리 미흡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따라 연말까지 전년도 개선 사항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라 한다)의 승인을 득한 후 매년 2월말까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3항에는 센터장은 확정된 구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21년, 2022년 연간 운영계획을 지자체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공개하였으며, 보조금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고함

▶ 조치사항: 주 의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공개 업무 준수 철저)

##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방침 공개 의무 미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수립을 하였으나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지 않음

▶ 조치사항: 시 정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

### 3. 조직구성 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구성 및 기능)에는 센터는 명예회장, 회장, 운영위원회 및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규칙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제2항은 정기회는 반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규칙 제4조(구조 및 기능)와는 상이한 조직도 (붙임 처분요구서 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 3회 정기회의로 운영하였으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시정·주의 (센터 홈페이지 조직도 정보 시정·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준수)

### 4. 공인 인영관리 소홀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6조(공인)에 따라 공인을 제작·관리하여야 하며,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인의 인영을 매년 2월 1일 인영부에 보존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회장’ 공인을 인영부 대장 날인을 이행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시정 (인영의 보존여부 확인을 위해 인영부에 인영 날인)

### 5. 승진임용 처리 절차 부적정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직원의 정원)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운영요원 5명 총 8명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 센터의 임용에 대한 사항은 「규칙」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원 규정상 운영요원은 급을 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지 않아 “승진” 심사를 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센터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2023.10월)하였고,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을 준용하여 직원승진(안)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승진임용을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징계 · 시정 · 기관경고 (징계 · 승진취소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6. 인사기록카드 관리 소홀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0조(인사기록)에는 인사담당자는 개별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동사항을 사실대로 인사기록카드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사기록카드에 인사명령에 의한 변동사항 작성을 현행화 하지 않는 등 인사기록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시 정 (개별 구비서류 및 인사명령에 의한 변동사항을 사실대로 인사기록카드에 작성)

## 7. 법정교육 이수 관리 부적정

- 「2023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연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연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연1 ~ 2회), 산업안전보건교육(매분기, 1회 3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연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운영지침」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계획하고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상·하반기 의무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이버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나, 2021년~2022년 미실시하고, 2023년에는 연 1회만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법정 의무교육을 계획 수립하여 이수 준수)

## 8. 보조금 관리 업무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7.13.시행)」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개정된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2021년 ~ 감사일 현재(2024. 4월) 까지 제·개정 이전 서식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으며 현행 법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하는 등 보조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보조금 교부 신청 업무를 관계 규정 준수)

## 9. 예산의 전용 절차 미준수

○ 「2023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회계업무표준규정」 제18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당초 예산과목인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예산의 전용을 할 경우에 예산전용요구서를 작성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산전용을 위한 절차 없이 전용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예산의 전용 시 회계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

## 10.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제1항제2호에 따라 센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구분하여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주기와 시기는 최소분기마다 공개하고 매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감사대상 기간동안 센터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및 예시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타시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증명서 등)를 첨부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추진함에도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 외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 **조치사항:** 시정·주의 (부적정 지출 업무추진비 300천원 회수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에 따른 집행내역 공개)

## 11. 특근매식비 집행 절차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품의를 한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토록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급량비 지급 절차가 사전품의 →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발급 →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품의 → 사업자 계좌로 선(先) 지출 →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로 급량비 지출 시 증빙서류 없이 선(先)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회계 관련 법규 준수)

## 12. 수의계약 관련 서류검토 소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따르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감사대상 기간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수의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첨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숙지를 위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 13.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 부과 업무 소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이하 “과세문서”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문서	세액
1~2. 이하생략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이하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12. 이하생략	이하생략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1~3. 이하생략	-	[조례 제6989호, 2023. 2. 20., 일 부개정] (2023.3.1.부터 시행)
4. 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b>(※ 개정 전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b>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실천주간사업(김장재료 구입)』은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20천원) 납부내역을 미확인 하였으며, 『업무 컴퓨터 구입』 외 6건의 사업은 대가지급 시 지역개발채권 430천원을 미징구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시 정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 450천원 추정)

## 14. 비품관리 업무처리 소홀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재산 및 물품관리)에 따르면 센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에 따르면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II.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5. 내용연수에 따르면 내용연수 책정기준은 물품별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등을 준용하며, 내용연수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물품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지 않은 물품은 동일 또는 유사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용연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확인하고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나 내용연수를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물품을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시 정 (물품의 내용연수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기재하여 관리)

## 15. 직원휴양시설 운영 부적정

-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규정에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0조(위임의 의의) 규정에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센터의 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봉사자 배치, 자원봉사활동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등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과 센터 근무자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축물(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7조(회계관리) 센터의 회계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위임장 확인 없이 해당 시설(건축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사용계약을 작성하였고 사용계약서상 주소지 역시 실제 위치한 주소와 상이하여 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안전 보험 미가입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고유 사무 외의 해당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센터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1일당 20천원을 휴양시설 담당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이 계좌에서 지출을 처리함으로써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 **조치사항:** 징계 · 시정 (징계·위임장 추인 및 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 시 까지 시설 운영 중단)